"檢 삼바수사는 정치편향적 이중성 드러낸 것"

이헌 변호사 "'언론 흘리기' 적법절차 위반 소지"
"물산-모직 합병과 삼바 회계변경 시점 다르다"
'논란의 분식회계, 삼바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유죄(有罪)인 것처럼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관치경제 정책과 반(反)기업·친(親)노조 성향이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사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헌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발(發) 리크 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리크 기사는 검찰이 기자에게 누설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삼성의 요구로 제일모직은 후하게, 삼성물산을 박하게 가치를 산정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당 보도 내용은 법원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구(舊)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일성신약 등이 각기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 하루 전인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며 "그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도 2017년 10월 19일 구(舊)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됐고, 그 기준인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형성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위 두 판결은 하급심이지만 '합병비율의 적법성'이란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헌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이헌 변호사(사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시장경제DB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공인의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검찰과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반법치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의 일방적인 과잉수사 방식은 정치편향적 이중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 "삼바 사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부풀려"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분식회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게 이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시작해 9월에 종료됐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분식회계는 합병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이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합병 이전에 분식회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의미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했지만, 정작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헌 변호사는 "집요하고 지독한 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의 양상은 우리 헌법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관치경제·좌파경제'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삼바 분식회계, 위법 단정 어려워"

학계 "회계 본질 망각… 반기업 권력 휘두른 것"
"삼성 때리기 설득력 잃자 삼바 분식회계로 걸어"

17일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회계처리 결정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은 물론 부당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바와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합작기업의 일반적인 지분구조나 국제회계기준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와 판권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다수 지분 파트너가 경영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소수 지분파트너 보호장치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동 지배 구조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합작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 구조로 나뉜다. 합작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합작회사 지분구조가 단독 지배 구조이면 연결회계, 공동 지배 구조이면 지분법 회계방식이 사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 85%,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다는 설명이다.

이병태(왼쪽 두 번째) 교수는 18일 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위원회 결정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며 "회계 정보의 본질을 망각한 반기업 권력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진=시장경제DB

실제로 미국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에 있다고 명시한 정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며 "회계 정보의 본질을 망각한 반기업 권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회계전문성이 미흡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법률을 위반했다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점도 경계했다.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계처리기준은 기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의적 표현이 적지 않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가리기 쉽지 않다. 자칫 외부감사법상의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등이 과도한 문서화작업 및 의견조회 등과 같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회사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다면 검찰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또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 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반법치적인 것"이라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때리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삼바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재범 기자 jbcho@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Outdoor Bronze Lion Campaign

Title: HOMEWORK 숙제
Client: CHUPA CHUPS (SNACK TO HOME LIMITED) 추파춥스
Agency: CHEIL WORLDWIDE HONG KONG
Product: CHUPA CHUPS
Copy: a sweet escape. 달콤한 해방